#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조승환·강민국·정희용

임이자 · 김성원 · 서일준

이성권 • 조지연 • 권영세

김승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110조 원, 국내 약 4조 원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이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의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계화·자동화·무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수산기자재 관련 산업도 함께 지원하여 수산기자 재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수산기자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고시, 신기술 수산기자재 보급 촉진 시책 마련,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수산기자 재의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 수산기자 재의 품질인증 등을 통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상기자재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지역 또는 집합체를 수산기자재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고,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안 제22조).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과 스마트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산기자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산기자재"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나. 수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다. 수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라. 그 밖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양식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2. "수산기자재산업"이란 수산기자재의 연구·조사·개발·생산·보

- 급·이용·기술훈련·안전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3. "수산기자재사업자"란 수산기자재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란 수산기자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조성된 지역 및 수산기자재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기 자재산업의 육성과 스마트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2장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 제4조(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 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수산기자재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 3. 수산기자재산업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4. 수산기자재의 생산・보급・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 5. 수산기자재의 스마트화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 6. 수산기자재 관련 기술훈련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사항
- 7.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 8. 수산기자재의 표준화, 품질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9. 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 때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① 그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기자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보급된 수산기자재의 만족도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수산기자재 통합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하여 수산기자재통합정 보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산기자재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수산기자재산업육성 전담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기자재산업육성 전담기관

- (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 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 등

- 제8조(신기술 수산기자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수산 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 에 적합한 수산기자재를 신기술 수산기자재로 지정·고시할 수 있 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수산 기자재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 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신기술 수산기자재의 지정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수산 기자재로 지정한 수산기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경우
  - 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 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10조(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는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 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경제지주회사 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 제11조(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 기자재 임대사업자(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수산기자재의 구입 및 운송,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임대사업자는 여성수산인 및 고령수산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수 있다.
  - ③ 임대사업자는 임대한 수산기자재를 직접 보관 및 관리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보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임대료를받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임대사업자는 임대 수산기자재의 특성상 보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직접구매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구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구매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임대료의 사용, 임대사업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 제12조(수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기자재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의 제공,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상담·지도,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 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 설비의 확보, 교재 개발과 교육 시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협회의 설립 등) ① 수산기자재사업자는 수산기자재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수산기자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 2. 수산기자재사업자의 저작권·상표권 등의 보호 활동 지원
  - 3. 수산기자재사업자의 공동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 4.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제15조(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수산기자재의 표준 개발 및 보급
  - 2. 수산기자재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 · 연구 및 개발
  - 3. 그 밖에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 제16조(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 제조 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업자가 수입한 수산기자재를 대상으로 그 환경친화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증(이하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 ③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수산기자재 인증을 한 자에 대하여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2. 수산기자재를 지원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 된 수산기자재의 우선구매 권고
  - 3. 그 밖에 수산기자재 품질인증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⑤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의 종류, 품목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인증표

지의 기간, 사후관리 등 품질 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2.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결과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 지 못하는 경우
  - 3.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을 받은 수산기자재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8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기자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다.

-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사후관리 등) ① 수산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산기자재의 사용에 필요한 사용설명서 등 제품규격 정보와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구입처를 제공하고, 관련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등 어촌지역의 수산기자재의 수리를 위해 이동 및 고정 수리소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산기자재에 대한 수리 등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안전교육)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수산기자재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지역 및 집합체를 수산기자재클러스터로 지정·조성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산기자재클러스터의 지정과 그 취소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에 따른다.

#### 제4장 보칙

제23조(자료제출의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 한다.

- 제2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27조제8항제2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이 끝날 때에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 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 2. 제9조에 따른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지정 취소
  - 3.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 4. 제22조에 따른 수산기자재클러스터의 지정 취소
-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소속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 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
  - 2.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 제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호에 따

- 른 신기술 지정과 제17조제1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홍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품규격 및 부품 제공, 부품 구입처 및 기술·교육자료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 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